

용자금 지원대상 및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

□ 용자금 지원대상 품목(용자클린규정 제7조 관련)

1. 안전보건 상 유해·위험 예방조치

- 가. 법 제38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산업재해예방 안전시설 및 장비
(단, “건설작업에 의한 위험예방” 제외)
- 나. 법 제39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산업재해예방 보건시설 및 장비
- 다. 법 제84조제1항 및 영 제74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2. 유해·위험기계 방호장치

- 가. 법 제80조 및 영 제70조(영 별표20)에서 정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장치
- 나.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영 제74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 다.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산업재해예방 방호장치
- 라.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을 받은 영 제77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자율안전확인” 대상 방호장치

3. 근원적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

- 가.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기구 및 설비
- 나. 법 제80조 및 영 제70조(영 별표20)에서 정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 단, 지게차의 경우에는 후방충돌방지 장치 또는 설비를 부착한 지게차에 한하여 지원 가능

- 다.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영 제7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단, 클러치가 확동식인 프레스 및 전단기는 개조하는 경우에 한함).

※ 단, 안전인증 대상설비와 구조적·기능적으로 연동·결합되어 도입되는 일체형 설비로서 안전인증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라.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산업재해예방 기계·기구 및 설비.

마.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을 받은 영 제77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

※ 단, 자율안전확인 대상설비와 구조적·기능적으로 연동·결합되어 도입되는 일체형 설비로서 자율안전확인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바. 법 제125조 및 규칙 제186조(별표21)에서 정한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작업자가 노출되는 것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체·자동화설비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제1호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의 근원적 개선을 위한 대체·자동화설비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산업재해예방 대행·인증·측정·진단·교육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가.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기관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및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또는 위탁 받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나. 법 제84조에 의한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를 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다. 법 제89조에 의한 자율안전확인 신고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를 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라. 법 제93조 및 영 제78조에 따른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 등”을 갖고 있는 사업장에서 안전검사에 필요한 장비

마. 법 제98조 및 규칙 제1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 수행 사업장에서 안전검사에 필요한 장비

바. 법 제102조 및 규칙 제137조에 따른 “유해·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에서 인정하는 것을 제조하는 자와 작업환경개선시설을 설계·시공하는 자로 등록된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장비

사. 규칙 제186조제1항의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을 갖고 있는 사업장에서 작업환경측정에 필요한 장비

5. 기타 산업안전보건 관련 시설 또는 장비 등

가. 고용노동부 및 공단으로부터 점검, 감독 또는 기술지원을 받은 결과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 공장건축물 등의 부분적 개·보수

나. 산업안전보건 관련 창안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기구 및 설비

다.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근력 및 근지구력 운동기기

라. 법 제128조의2, 규칙 제194조의2에 따라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갖추거나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마.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로서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것